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8

발의연월일: 2020. 9. 3.

발 의 자:고민정·김남국·김승원

김용민 · 김주영 · 문진석

서동용 • 윤미향 • 이용빈

임호선 · 황운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모임·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5분의 1(60명)이고 안건 의결을 위한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151명)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 모임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할 경우 국회 본회의도 금지 대상에 해당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화상 출석과 표결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본 법 규정에 따라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유에 한정하여 한시 적으로,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진행할 수 있다.

-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본회의에 출석하여 진행하는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진행할 수 있다.